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 이유

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반복 운영하는 경우 일괄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의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동일한 활동이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4개월 동안의 활동을 일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신고제 근거 마련(안 제1조의2제2항)
- 나.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(안 제1조의2제4항)
- 다.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변경 신고시 운영 및 보조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1조의2제5항)
- 라.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시 활동참여자로부터 제출받은 건강상태 확인서의 파기 근거 마련(안 제1조의3제2항)
- 마.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에 강사로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정(안 별지 제2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활동 중 장소와 내용이 동일한 활동이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신고시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자 및 보조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당해 연도 최초 신고 후 4개월까지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단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1. 신고한 내용과 실제 운영되는 활동의 일치 여부
2.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운영자 및 보조자의 결격사유 유무

제1조의2제4항(중전의 제3항)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활동 중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변경 신고된 사항 중 활동 운영자 및 보조자가 변경된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

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는 활동 종료일로부터 4주간 보관할 수 있으며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.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지 2호의 개정서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주최자 · 운영자 · 보조자 명단

소속	성명	주민등록번호 (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	담당업무	자격증	자격발급기관	비고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) ① (생략)	제1조의2(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활동 중 장소와 내용이 동일한 활동이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신고시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자 및 보조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당해 연도 최초 신고 후 4개월까지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단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	1. 신고한 내용과 실제 운영되는 활동의 일치 여부
	2.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운영자 및 보조자의 결격사유 유무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	④ ----- ----- ----- -----

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그 사유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시작 3일 전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＜후단 신설＞

<신 설>

제1조의3(건강상태 확인 방법)
(생 략)
<신 설>

-----, 다만
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에
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
항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
다.

⑤ 제4항에 따라 변경 신고된 사항 중 활동 운영자 및 보조자가 변경된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조의3(건강상태 확인 방법) ①
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
는 활동 종료일로부터 4주간 보
관할 수 있으며 이후 개인정보
보호법의 제21조에 따라 파기하
여야 한다.